

부산해양경찰서

수신자 **최대식**
(경유)

제 목 **압류 통지**

최대식 귀하(귀사)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상호)	최대식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671226-1*****
	주소 (사업장)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13길 38, 남양산역반도유보라 6차아파트 609동 1001호			
압류재산의 표시		전자 예금(하나,농협,SC제일,부산은행)			
압류일자		2020년 09월 07일			
압류조서작성일자		2020년 09월 07일			
압류사유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 조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12-56-563	0112190257 390000308	2019년	-	-	
과태료		817,500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가 확정하지 아니한 때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끝.

부 산 해 양 경 찰 서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획운영과 담당자 황인용(전화:051-664-2417)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